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8일, 강유정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01.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1.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유정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부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을 대리해 보호자 등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다운로드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이유와도 배치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 중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보장 및 이용편의 제공’ 대상의 범위를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서관자료에 대한 <u>장애인의</u>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4. ----- <u>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u> ----- -----
5. ~ 12. (생략)	5.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4조¹⁾는 지식정보 취약계층²⁾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 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점자자료, 녹음자료, 디지털 음성도서, 장애인 접근 전자책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식의 도서관자료를 개발하고, 장애인이 도서관 방문 없이도 인쇄도서자료 등을 자택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 대출서비스 등 도서관 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자 등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는 장애인과 함께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물리적 거리 등으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도서관자료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일부 온라인서비스³⁾의 경우 장애인 보호자 등이 이용할 수 없어 곧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1) 「도서관법」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2)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자료 중 복제방지기술이 적용된 자료는 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나, 공포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자료는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으로 가입된 장애인회원에게 한해서만 제공하고 있음.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업무 중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편의 제공’ 대상의 범위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등의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알권리를 향상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장애인 보호자에 대하여 대체자료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이용 기준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이 도서관자료 이용에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소위원장)

원안가결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서관자료에 대한 <u>장애인의</u>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4. ----- <u>장애인</u> <u>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u> <u>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u> <u>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u> <u>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u> <u>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u> <u>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u> ----- -----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